

윤 리 지 침

한국막학회는 학회지인 “멤브레인(Membrane Journal)”을 정기적으로 발간함으로써, 분리막 분야 학술과 기술의 발전 및 보급에 기여하며, 분리막 관련 산업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리고 지자체 및 행정부처 등 사회 전체의 발전에 공헌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본 학회 학술지가 급변하는 지식기반 사회의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도 분리막 분야의 높은 수준의 학술적 가치를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회지 발간 윤리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하고자 한다.

2016. 6. 20 제정, 2017. 4. 19 개정, 2019. 1. 21 개정, 2019. 12. 12. 개정, 2020. 3. 13. 개정.

I. 투고 논문 저자

1. 투고되는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이를 위한 종합적인 근거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3. 투고 논문과 관련된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특별한 화학약품, 기구, 장비 등과 실험과정의 특성 및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혀야 하며, 인간의 보편적 윤리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논문에 인용된 학술자료는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그 밖의 방법으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서면으로 얻은 후에 인용할 수 있다.
5. 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하며, 논문 투고 전에 반드시 논문 제목과 내용에 대해 모든 공저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부당한 저자 표시’라 함은 연구 결과 또는 내용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문적으로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의 각 목에 위배되면 원칙적으로 부당한 저자 표시에 해당된다.
 - (1) 연구를 계획하거나 자료의 수집·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참여를 한 사람, 학문적으로 주요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수정한 사람, 최종 게재된 논문을 승인한 사람,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 사람만이 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연구비 수주, 자료 수집, 연구 관리만을 담당한 사람은 저자가 될 수 없다.
 - (2) 저자 표시 순서는 연구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에 따라 결정하되, 참여한 저자 간의 합의에 기초하여야 한다.
7.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8. 논문의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히 서면으로 편집장에게 알려야 한다.
9. 저자는 생물학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sex)과, 정체성·심리사회학적 또는 문화적 인자들을 보고할 때 성별(gender)이라는 용어의 올바른 사용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구 참여자의 성/성별, 동물이나 세포의 성을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성과 성별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을 기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쪽 성별과 같이 독점적인 집단이 포함된 연구가 수행되었을 때 저자는 명백한 경우(예 : 전립선 암)를 제외하고 그 사유에 대한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저자는 인종 또는 민족을 구분한 방법을 정의하고 그 타당성을 밝혀야 한다.

II. 논문 심사위원

1.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각 분야 편집위원을 통해 편집장이 의뢰하는 논문을 학술지 심사규정이 정한 기간 내에 성실하게 심사하여 학술지 및 학술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2. 심사위원은 각 분야의 과학적, 학술적 기준을 충분히 유지하면서 심사하는 논문에 포함된 실험과 이론의 내용, 결과의 해석, 설명의 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3. 심사위원은 전문 지식인으로서의 저자의 인격과 독립성을 존중하여야 하며,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는 심사의견서에는 논문에 대한 자신의 판단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을 그 이유와 함께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출판되기 전에는 저자의 동의 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할 수 없다.
5. 심사위원은 심사하는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중요한 연구 결과 및 자료가 정확하게 인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심사하는 논문의 일부 내용이 이미 학술지에 공개된 다른 논문과 매우 유사할 경우에는 편집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알려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규정에 따른 시일 내에 심사를 마치고 심사 의견서를 각 분야 편집위원에게 보내야 하며, 만약 자신이 논문의 내용을 심사하기에 책임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편집위원에게 곧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7. 논문의 저자와 동일 소속기관의 심사위원에게는 심사를 의뢰하지 않는다.

Ⅲ. 편집장 및 편집위원

1.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을 저자의 성별, 나이, 소속 기관 또는 저자와의 개인적인 친분에 관계 없이 논문의 질적 수준과 투고규정을 근거로 공정하게 취급하여야 한다.
2.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지체 없이 논문 출판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논문의 학술지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 모든 책임을 진다.
4.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전공 분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공정한 판단 능력을 가진 제삼자에게 논문의 질과 정확성에 대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학술지 게재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하지 않고 발송할 수 있다.
5.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학술지 게재가 확정될 때까지 심사위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말아야 한다.
6.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은 저자의 인격과 학자적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
7. 각 분야 편집위원 및 편집장의 본 학회 학술지 투고 논문은 다른 편집위원이 심사하여야 한다.
8. 투고한 논문과 관련하여 특정 인사를 심사위원으로부터 제외시켜줄 것을 저자로부터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과 편집장은 투고된 논문의 내용을 고려하여 이를 결정할 수 있다.
9. (제재 공지) 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된 제재 조치를 학회 홈페이지나 학회지에 공고하며, 필요 시 해당 피조사자의 속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